
K-water 수행사업 참고자료 (1권)



1. 경영전략의 이해



1 개념 및 중요성

전략은 예상되는 외부의 변화에 따른 기회 또는 위협요인과 기업이 가진 역량의 강·약점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군사용어에서 유래했으며, 경영학에 최초로 도입한 찬들러(A. Chandler)는 전략이란 “조직의 기본적인 장기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양식을 채택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경영전략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여 조직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틀이다. 경영자는 이를 통해 조직이 직면한 문제를 전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극심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 설정, 환경에 대한 이해, 경영 자원에 대한 분석 및 배분 등을 포함한 전략수립은 필수적이다. K-water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 및 정책 동향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분도 전략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전략체계 및 구성요소

전략은 이념체계인 가치체계와 이를 구체화한 전략체계로 구성된다.

가치체계는 기업의 설립목적을 함축하여 명문화한 것으로, 조직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이념체계이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최상위 기준이 되며, 미션·비전·핵심가치·경영방침으로 구성된다. 가치체계가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므로, 수립할 때 직원 공감도 조사, 계층별·세대별 그룹 워크숍 등 의견수렴단계를 거친다.

미션은 조직의 존재가치와 업(業)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할 것을 표현한 것이며, **비전**은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핵심가치**는 조직의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신념 또는 모든 의사결정과 조직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기업문화를 구성하는 신조를 말한다. **경영 원칙**은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지도원칙으로 CEO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기준이다.

전략체계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미션을 수행하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실행과제를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비전과 연계하여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선정한다. 다음 [도표]는 이러한 틀에 따라 설정된 2024년 K-water의 가치·전략체계이다.



2.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

K-water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¹⁾이다.

K-water의 법정자본금은 15조원으로 K-water에 출자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K-water 설립의 근거법률로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된 이래 K-water의 발전 및 역할 변화와 함께 수차례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표] 한국수자원공사법 연혁

'66 ~ '72	'73 ~ '86	'87 ~ 현재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특수법인'이란 국가정책상 공공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의 총칭으로, 좁은 의미로는 재정 경제면이나 경영관리 및 운영상 이유에 따라 특정한 국의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형태의 법인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각 설립목적에 맞게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 K-water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한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류이다.

[도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류

유 형		분류 기준	운영 방향
공기업	시장형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 자체수입이 총수입 대비 85/100 이상	- 민간기업 수준의 자율 보장 - 내부건제시스템 강화
	준시장형	- 자체수입이 총수입 대비 50/100 이상이고, 85/100 미만인 경우	- 자율성 확대 - 일부 공공성 감안 외부감독 강화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	- 기금운용 이해 관계자 참여 보장
	위탁집행형	- 기금관리형 외 준정부기관	- 주무부처 정책과 연계성 확보

3. 사업범위에 관한 법령



1 사업범위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에서는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K-water 사업범위]

-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 2) 광역상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지방상수도사업 및 마을상수도 사업(다만, 지방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경우에 한함)
- 3) 댐의 수질조사, 댐 상류의 수질조사 및 물환경 관리사업(하수도 운영·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 4) 물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 7)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 8)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 9) 조사·측량·설계·시공감리·시험·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 10)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 11) 수자원개발 시설분야·상수도분야·기타 수자원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 12) 다른 법령에 따라 K-water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또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사업범위의 변화

K-water의 사업범위는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1966년 제정된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은 K-water의 사업범위를 수자원개발로 규정하였다. 1973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으로 폐지·흡수되면서, 종전의 수자원개발 기능 외에 산업기지개발 사업기능이 추가되었다. 이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라 1976년 해외수주근거 신설, 1978년 특수지역개발사업 추가, 1981년 공업용수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가 추가되었다.

1987년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K-water의 업무 및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폐지·흡수되면서, 기존 사업범위 중 공단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기능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으로 1990년 K-water의 수자원관련 사업범위에 광역상수도시설(정수시설 포함) 건설, 하수처리시설 건설·관리, 댐 내 수질조사, 상하수도 기술지원 및 교육기능이 추가되었다. K-water의 공단 및 특수지역개발사업도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사업구역과 관련된 지역에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93년에는 K-water가 건설·관리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K-water가 전액 투자한 시설로 제한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광역상수도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1년 K-water의 사업범위에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진단이 추가되었다. 2009년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업무가 추가되었으며, 해외사업 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2018년 국외에서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사 사업에 대한 승인·감독 등의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에는 2019년에 시행된 물관리 기능조정에 따라, 사업범위가 확대 조정되었다. 지방 및 마을 상수도사업의 시행근거(지자체 위탁)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존 댐의 수질조사에 한정된 물환경사업을 댐 상류에 대한 수질조사와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하수도 운영·관리 등 물환경관리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물공급과 연계한 물재이용 사업근거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2021년에는 법정자본금 한도가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공사가 개발·관리하는 시설·부지는 물론,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부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기업 홍보 (브랜드 활동)



1

브랜드의 개념

브랜드(Brand)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와 차별하기 위해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름, 상징 또는 디자인 및 이들의 결합체를 말한다. 기업 브랜드(Corporate brand)는 개별제품(사업)의 품질을 보증·후원하기 위하여 자사의 제품명에 사용하는 기업의 상호로 소비자에게는 신뢰성과 일관성,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등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공사의 기업 브랜드는 ‘K-water’이다.

CI(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 통합)는 기업의 역할·비전 등을 명확하게 하여 기업 이미지나 행동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추구하는 가치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외부로 표현한다. 주로 기업의 로고나 상징 마크를 통해 나타낸다. K-water의 CI는  이다.

BI(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 통합)는 제품이나 사업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하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말한다. K-water의 BI 중 대표적인 것은 아라뱃길의 , 시화지구의  이다.

2

올바른 브랜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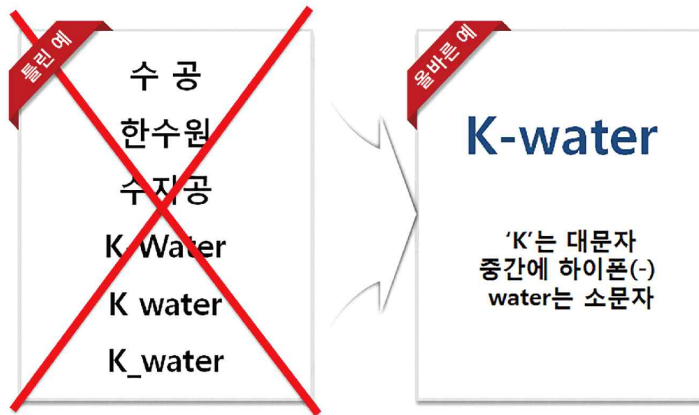
브랜드 활동이란 기업의 비전, 문화, 고객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정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조직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창출한다.

브랜드는 목적에 맞게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명확성과 주목도를 높이려면 확고한 기업 브랜드 전략 아래 일관된 브랜드 활동이 필요하다.

기업의 전략적 자산인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과의 소통채널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CI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브랜드의 생성은 물론 변경 시에는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연계한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CI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홍보물 제작, 브랜드 생성 및 변경(리뉴얼)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홍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K-water의 올바른 브랜드 사용방법이다.

[도표] K-water 브랜드의 올바른 사용법



5. 성과관리



1 성과관리의 개념

조직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주어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성과관리에 대하여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미흡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완과 피드백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즉, 성과에 따른 보상을 차등화 함으로써 경영목표의 달성은 물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전략달성을 촉진할 수 있다.

2 성과평가 시스템

성과평가는 평가기준인 성과지표를 미션·비전 등의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설정하고, 실제 성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는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와 목표관리제(MBO, Management By Objectives)가 있다.

1. 균형성과표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¹⁾는 성과를 보다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도 평가기준으로 포함하는 평가시스템을 말한다. 이때 성과지표²⁾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이 나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여 도출한다.

1) 1992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캐플란 교수와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노턴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논문에서 주장된 이론을 말한다.

BSC 성과지표는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구성된다.

재무 관점은 순이익이나 매출액과 같이 과거 기업활동에 대한 재무적 결과를 말한다. BSC가 아닌 기존의 성과평가 시스템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기업의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고객 관점은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도, 신규고객 증가 수, 고객 충성도 등이 있다.

프로세스(업무처리) 관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일처리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로, 일련의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뢰성이나 신속성 등을 뜻한다.

학습과 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만족과 같이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를 말한다. 이 관점에 따를 때 직원의 교육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재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 재무 관점 위주의 성과평가와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2.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MBO, Management By Objectives)³⁾는 상하 조직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후에 결과를 측정·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관리체제 내지 관리기법이다.

목표관리제(MBO)의 핵심은 조직단위 및 구성원의 목표성취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취하고자 의도한 성과목표를 계량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성과지표'란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함으로써 달성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말한다.

3) 1954년 피터 드러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

6. 회계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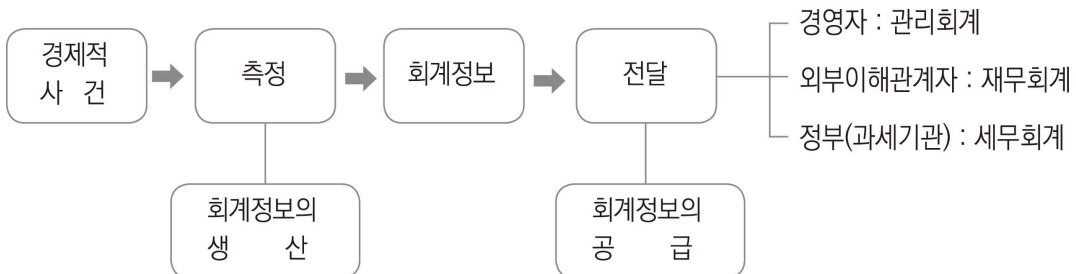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재무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회계는 이러한 기업의 합리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련한 변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용한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회계를 주로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실무적 기술로 여겨 왔으나, 최근에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1 회계일반

회계이론에서는 기업이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그 기업의 영업활동도 영구히 계속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회계정보의 측정과 보고를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단위(통상 1년)에 따라 하게 된다. 경제적 사건의 측정에서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의 회계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회계절차의 흐름



기업의 경영에는 다양한 집단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게 된다.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자,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 정부 등 기업의 회계정보이용자는 다양하다. 회계는 회계의 목적, 회계정보이용자 등에 따라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로 나눌 수 있다. 경영자에게 기업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주주 등 외부이해관계자들의 투자결정을 위한 회계는 재무회계라고 한다. 관리회계와 재무회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관리회계와 재무회계 비교

구 분	관 리 회 계	재 무 회 계
목 적	•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경영계획, 경영통제 등)	•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투자결정, 신용결정 등)
보고대상	• 경영자(내부이용자)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외부이용자) •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등
작성양식	• 일정한 서식이 없음 (예산, 원가보고서, 성과보고서)	• 재무제표
보고시점	• 필요시 수시 보고	• 보통 1년 단위(또는 반기)
법적강제력	• 법적강제력 없음 • 회계처리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	• 법적강제력 있음 • 회계처리의 자유로운 선택 제한

2 재무제표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기업이 일정한 주기와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공하는 보고서를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라고 한다. 재무제표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인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나타내는 회계보고서를 말한다. 여기서 자산은 기업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 확보를 위해서 주주들로부터 조달하여 내부적으로 조성된 것을 자본이라고 하며, 은행 등 외부자금 공급자로부터 조달받는 경우를 부채라고 한다.

자산, 자본, 부채의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하는데,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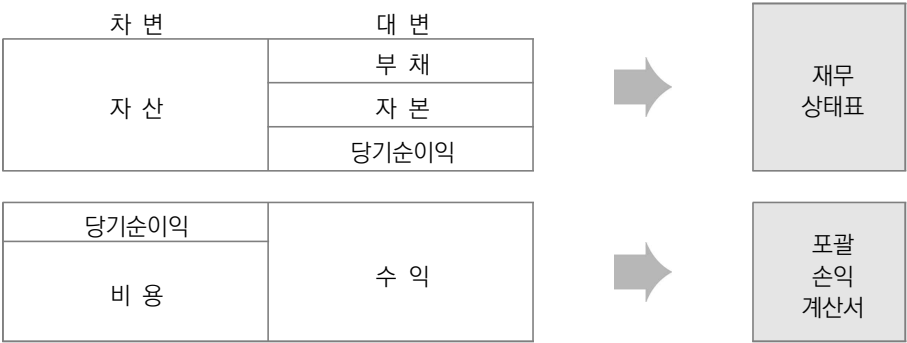
자 산
=
부 채
+
자 본

포괄손익계산서란 일정기간(회계기간) 동안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수익, 비용, 이익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서 회사의 경영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수익은 회사가 벌어들인 수입이고,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대가를 비용이라 한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 의하여 이익(earnings, 또는 당기순이익)이 계산 된다. 수익과 비용, 이익의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하는데, 이를 ‘포괄손익 계산서등식’이라고 한다.

이 익
=
수 익
-
비 용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것이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시점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그 다음의 일정시점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사이에 발생한 경영성과를 보여주게 되어 양 재무상태표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계산서는 당기순이익/순손실로 연결된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순손실은 재무상태표의 현금(자산)과 이익잉여금(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의 작성원리는 다음과 같다.

[도표] 기본 재무제표 작성원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이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계정은 기업 간 또는 외부정보이용자들과의 약속이므로 계정 이름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년 이내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자산은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유동자산의 계정과목에는 현금,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등이 있다. 비유동자산의 계정과목에는 건물, 토지 등이 있다. 부채도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한다.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유동부채라고 한다. 유동부채에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등이 있으며, 비유동부채에는 사채⁴⁾, 장기차입금 등이 있다. 자본항목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등이 있다.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수익은 크게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매출액은 판매목적으로 생산 또는 구매한 제품의 판매액이다. 영업외수익은 매출 이외의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것으로 이자수익, 투자수익 등이 있다. 특별이익은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활동에 의하여 기업에 이득이 된 것들로 구성된다.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등이 있다.

4) 회사채의 줄임말이다.

7.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댐 건설은 댐하류 등에 안정적인 용수·전력공급 및 홍수방지 등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댐 주변지역에는 인구유출, 지역경제 약화,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제약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댐 주변지역에 입게 되는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댐하류 수혜자의 부담으로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여 지역 간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1 대상 댐 및 재원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은 저수면적이 200만 m^2 이상 또는 저수용량이 2천만 m^3 이상인 댐이다. 다음은 2025년 기준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인 댐 현황이다.

[도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 댐 현황(2025년 기준)

다목적댐(20)	홍수조절용댐(3)	용수전용댐(14)
소양강, 안동, 대청, 충주, 합천, 주암, 임하, 남강, 부안, 섬진강, 횡성, 용담, 밀양, 보령, 장흥, 군위, 김천부향, 성덕, 보현산, 영주	평화, 군남, 한탄강	사연, 수어, 영천, 운문, 대곡, 광동, 달방, 평림, 감포, 안계, 대암, 선암, 구천, 연초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발전판매수입금과 생·공업용수 판매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섬진강댐⁵⁾을 제외하고는 K-water가 출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댐 관리청 또는 댐 사용권자의 출연금(발전 판매수익금, 생·공업용수 판매수익금), 생활·공업용수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생·공업용수 판매수익),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이 있다.

5) 섬진강댐은 발전부문 댐사용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출연한다.

이에 따라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전전년도 발전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K-water의 댐 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금액을 출연금으로 출연한다.

2 사업계획 수립대상

댐법에서는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 발전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과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협의회나 댐 관리자가 인정한 지역이다. 사업계획 수립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사업계획 수립구역

구 분	사업계획 수립구역
당해 댐 지원금 사업구역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 • 기타 댐 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인정한 지역
별도 사업계획 수립구역	• 댐 관리자가 인정하는 다음 지역 -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 그 밖에 댐건설·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

참고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는 댐별로 6~21명으로 구성하며,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 심의, 지원금의 배분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업의 종류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는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이 있다. 지역 지원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며, 주민지원사업과 기타지원사업은 K-water가 시행한다.

지역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기반 조성,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지원사업에는 공동 영농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마을회관 조성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조성사업, 자전거도로 등 댐 주변 경관을 활용한 휴양·레저시설 등을 설치하는 댐 주변경관 활용사업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주민 자녀의 육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때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은 댐 주변지역 내 거주주민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주민지원사업에는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 지원, 난방비 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과 주민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학교 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사업이 있다.

기타 지원사업은 댐 저수사용료 보조사업과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 견학 홍보사업, 지원사업협의회 운영 등과 같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 등이 있다.

8. 요금의 결정원리



1

공공요금의 개념

요금이란 수요자(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⁶⁾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세나 부담금과 구별된다.

【구별개념 :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
예 :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교육세, 관세 등

【구별개념 : 부담금】

-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대상과 특정 공익사업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예 : 물이용부담금, 신용보증기금, 농지보전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등

이러한 요금 중 공익기업이 생산, 운영, 판매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나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한다. 전기, 수도, 철도,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서비스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수요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요금을 시장의 원리에만 맡길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라 자연독점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독점성을 인정하는 대신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규제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공공요금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 결정 시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수입액을 확보하여야 하고(채산성), 효율적이고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효율성),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소비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공평성)하여야 한다.

6) 전기, 가스, 고속도로, 상하수도, 철도,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이 있다.

공공요금의 종류는 관리주체에 따라 중앙 공공요금과 지방 공공요금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 공공요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는 도시가스(도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전기료, 광역상수도, 댐용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통신료 등이 있다.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또는 조례 등으로 결정하는 요금이다. 전철료, 상수도료(소매), 하수도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이 있다.

2 공공요금 체계

1. 공공요금의 결정원리

공공요금의 결정원리로는 서비스 원가주의, 서비스 가치주의, 경쟁가격주의, 사회적 원리주의가 있다.

서비스 원가주의는 서비스의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K-water의 댐 및 수도요금 결정방식도 여기에 해당한다. **서비스 가치주의**는 서비스의 생산원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철도화물요금⁷⁾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쟁가격주의**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경쟁시장을 가정하여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공공요금은 일반적으로 독점상태에 해당하므로 경쟁가격주의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 원리주의**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부담능력주의’, ‘복지(편익)확산주의’ 등이 있다.

2. 공공요금 수준 및 체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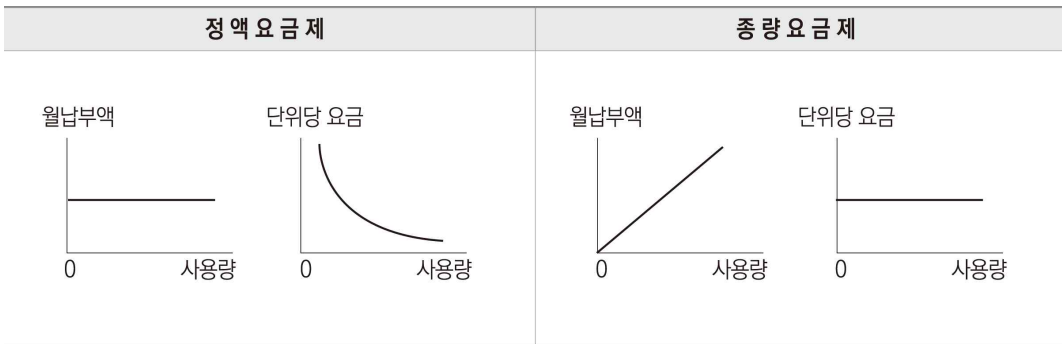
공공요금은 요금수준과 요금체계의 설정으로 결정된다.

요금수준 결정방식에는 서비스 원가주의에 기초하여 단위당 평균비용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총괄원가보상방식’이 적용된다.

7) 고가품 운송료가 저가품 운송료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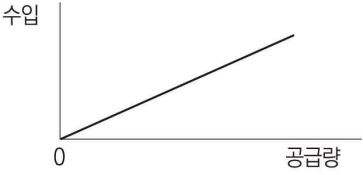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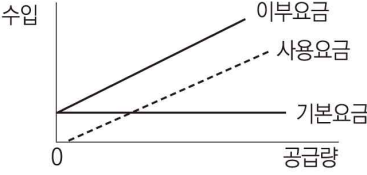
요금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에 따라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한다. **정액요금제**는 서비스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단순·명확하며 사용량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용형태가 다양한 소비자 간에 불공평하게 요금이 부과되고, 낭비를 조장한다는 단점이 있다. **종량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액요금제보다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극단적으로 사용량이 없을 경우 원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도표] 정액요금제 및 종량요금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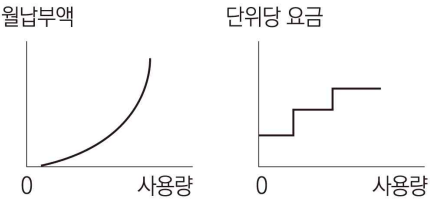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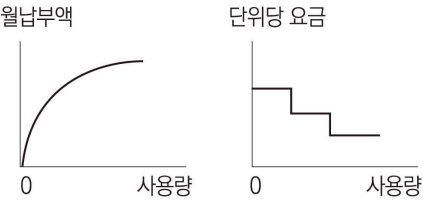
요금제가 구성된 방식에 따라서는 단일요금제와 이부요금제로 구분한다. **단일요금제**는 정액요금제 또는 종량요금제 한 가지 방식으로만 구성된 요금제를 말한다. **이부요금제** (two-parttariff)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요금제도이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이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정액요금제로 고정비를 회수하고, 사용요금은 종량요금제로 변동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표] 단일요금제와 이부요금제 비교

단 일 요 금 제	이 부 요 금 제
 수입 공급량 0	 수입 이부요금 사용요금 기본요금 공급량 0
• 가격산정의 편의성 • 자원확보의 용이성 • 예 : 댐용수, 가스(도매용)	• 정액요금은 고정비 회수 • 사용요금은 변동비 총당 • 예 : 광역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그 외 소비량에 따라 요금이 증감하는지에 따라 **체증요금제**(Increasing Block Tariffs, 누진요금제)와 **체감요금제**(Decreasing Block Tariffs)로 구분한다. 체증요금제는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요금이 상승하는 구조이며, 체감요금제는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요금이 하락하는 것이다. 다음은 체증·체감요금제의 비교이다.

[도표] 체증요금제와 체감요금제

체 증 요 금 제	체 감 요 금 제
 월납부액 단위당 요금 0 사용량 0 사용량	 월납부액 단위당 요금 0 사용량 0 사용량
• 고소득층에서 소비도 많이 한다는 가정하에 소비증가에 따라 요금을 올리는 방식	• 대량소비에 대한 저렴한 요금 부과 • 소득재분배와 상충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됨 • 소비 장려로 수요를 증대시켜 자원낭비 유발

9. 요금제도



1 댐용수 요금

K-water는 1973년 소양강댐을 시작으로 안동댐·충주댐 등 2025년 기준 20개 다목적댐 및 낙동강 하굿둑을 관리하고 있다. 연간(2025년 기준) 댐용수 공급능력은 총 120억㎥으로 생공용수 89억㎥, 농업용수 17억㎥, 하천유지용수 14억㎥이다. 이 중 생공용수를 44개 지자체 및 89개 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댐용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K-water가 댐 및 하구둑에서 공급하는 물을 말한다. 댐용수 사용 계약, 요금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댐용수공급규정」이 적용된다. 「댐용수공급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에 따른 약관에 해당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댐용수 요금제도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요금제 및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전국 동일요금제⁸⁾로 운영되고 있다.

[도표] 댐용수 요금단가

수 종	요금단가
댐용수	52.7원/㎥

8) 전국동일요금제는 필수 공공재인 물 이용의 형평성 및 지역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1980년대 정부 정책으로 도입·적용되고 있다.

K-water는 1965년 울산 공업용수도를 시작으로 2025년 기준 수도권, 대청 등 36개 광역수도시설 및 14개 공업용수도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수도시설 (37.9백만 $\text{m}^3/\text{일}$)의 51.0%(19.4백만 $\text{m}^3/\text{일}$)에 해당한다. K-water는 26개 취수장, 44개 정수장 및 6,125km의 관로를 통하여 113개 지자체와 1,800여개 기업체에게 원수, 정수, 침전수를 공급하고 있다.

K-water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수돗물공급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은 수돗물의 공급방법, 요금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돗물공급규정」은 「담용수 공급규정」과 마찬가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해당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제도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 혼합된 이부요금제 및 수종(水種)별 차등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고정비 회수를 위한 기본요금 및 변동비 회수를 위한 사용요금으로 구분되며(“이부요금제”), 수처리 공정에 따라 원수·정수·침전수⁹⁾로 구분된다(“수종별 차등요금”). 아울러 담용수 요금과 마찬가지로 전국 동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¹⁰⁾.

아래의 표는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 단가를 나타낸다.

[도표] 광역상수도 요금단가

구 분	요금단가	기본요금단가	사용요금단가
원 수	233.7원/ m^3	70원/ m^3	163.7원/ m^3
정 수	432.8원/ m^3	130원/ m^3	302.8원/ m^3
침전수	328.0원/ m^3	98원/ m^3	230원/ m^3

9) 원 수 : 자연 상태의 수돗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에 공급하는 수돗물

정 수 : K-water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원수를 음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돗물

침전수 : 원수를 침전하여 산업활동 등에 공급하는 수돗물

10) 광역상수도과 달리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조례로 그 요금이 결정되므로, 지방상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10. 발전사업



K-water는 1973년 소양강 다목적댐을 준공하여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2025년 현재, 대수력발전소 22기(1004.6MW), 소수력발전소 95기(88.787MW), 조력발전소 10기(254MW), 풍력발전소 5기(8MW), 태양광발전소 92기(93.02MW) 등 총 224기(1448.42MW)의 설비를 운영하여 국내에 전력공급을 하고 있다.

또한, K-water는 유역별(한강, 금강·영산강·섬진강, 낙동강)로 발전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으로 감시, 제어하고 있다.

[도표] 대수력발전소(5MW 이상) 9개소(설비용량 : 1004.6MW)

구분	계	소양강	충주	대청	안동	합천	주암	임하	남강	용담
설비용량	1,004.6 (22기)	200 (2기)	400 (4기) 12 (2기)	90 (2기)	90 (2기)	100 (2기)	22.5 (2기)	50 (2기)	18 (2기)	22.1 (2기)

[도표] 소수력·조력·풍력·태양광발전소

구분	계	소수력	조력	풍력	태양광
설비용량	443.807 (202기)	88.787 (95기)	254 (10기)	8 (5기)	93.02 (92기)

11. 수변사업



수변사업은 자연상태(전·답·임야 등)의 미개발 토지를 손실보상을 통해 취득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기반시설공사(연약지반처리,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를 완료하여 수요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변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양하다. K-water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친수단지 조성을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변사업을 그간 시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참여 요청에 의해 사업 범위가 다각화되는 추세이다.

K-water는 1967년 창립 이래 창원, 구미, 여수, 안산 등 국내의 주요 산업도시를 조성하였다. 현재는 시화지구에 첨단산업 및 연구 기능을 갖춘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와 자원순환형 생태도시로 송산 그린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구미 확장단지·하이테크밸리(구미5단지) 조성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한 김포·인천 터미널 물류단지 사업, 4대강사업과 연계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 조성사업, 강원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표] 수변사업 진행현황 (2025년 기준)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면적(천㎡)	총사업비(억원)	비 고
계		90,196	221,920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65,004	124,833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02~'25	9,947	36,021	첨단산업, 해양레저
- 송산 그린시티	'07~'35	55,057	88,812	관광레저, 생태주거
친수구역 조성사업		11,985	66,587	
- 부산 에코델타시티	'12~'28	11,769	66,051	친수공간 스마트 수변도시 첨단산업, 국제물류, R&D
- 나주 노안지구	'12~'21	105	287	문화·생태·전원 수변마을
- 부여 규암지구	'12~'26	111	249	문화·생태·관광 수변마을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11,802	27,460	
- 구미 확장단지	'08~'24	2,476	8,133	구미4단지 등 배후지원 기능
- 구미 하이테크밸리	'09~'25	9,326	19,327	전자·정보, 탄소산업 신소재
지역개발사업		816	3,040	
- 강원도 수열E 클러스터	'20~'27	816	3,040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12. 해외사업



1 해외사업 수행방식

해외사업은 크게 투자사업과 공적개발원조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투자사업은 K-water의 지분(자기자본)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 부담 등을 이유로 민간에 공공 인프라 시설의 건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권한과 사업비 회수 구조를 제공하는 방식(BOT: Build, Operation, Transfer)이 대표적이다.

투자사업의 유형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첫째 신규시설의 건설·운영을 하는 방식(Green Field), 기존 시설의 인수·운영하는 방식(Brown Field)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규시설 건설·운영방식은 경쟁입찰 방식과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쟁입찰 방식은 해당 정부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BOT 방식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업자 제안방식은 사업수행자가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발주청에 제안하여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해당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발주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 관련 법제 정비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시설 인수·운영방식은 지분 인수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주로 유럽 등의 성숙시장이나 중국 등에서 발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현지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해당사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인수 금액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ODA 사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등을 위해 증여(Grant) 및 차관(Concessional Loan)의 형태로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증여(무상 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며, 차관(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등을 활용하여 주관한다.

기타사업은 위의 투자사업과 ODA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 현지정부가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특정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관리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사업별 기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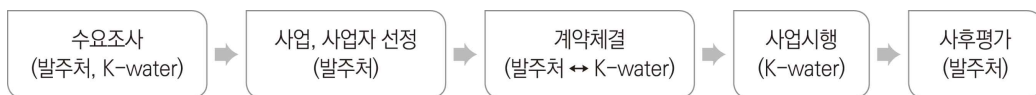
사업의 유형별로 추진 절차는 다소 다르다. 투자사업은 사업정보 수집 등의 기본조사와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참여 준비, 투자심사·이사회 의결 등 사업참여를 위한 의사결정 단계를 거친다. 이후 계약체결, 금융조달 등을 거친 후 사업을 수행한다. 다음은 개괄적인 투자사업의 수행절차이다.

[도표] 투자사업 업무수행 흐름도



ODA 사업의 경우 사업 수요조사가 첫 단계이다. 이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데 발주처(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해당국 정부)에서 수요조사하기도 하지만, K-water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요청하기도 한다. 수요조사 후에는 발주처에서 타당성조사 등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할 사업과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K-water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발주처와 계약체결 후 사업을 시행한다. ODA 사업은 투자사업과 달리 발주처에서 사업시행 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은 개괄적인 ODA 사업의 수행절차이다.

[도표] ODA 사업 업무수행 흐름도



기타사업은 사업별로 표준화된 절차가 존재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해당정부가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기획 단계와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사업시행, 사업준공 절차가 일반적이다.

13.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1. 수도의 관리 주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이하 '지방상수도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도법」상 수도는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다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로 나눌 수 있다. 광역상수도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K-water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이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이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대부분의 수돗물은 이러한 지방상수도에 해당한다. 또한,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공급하는 수도이다.

수도 중 일반수도는 건설과 운영의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가동률의 하락, 수도서비스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지방상수도제도

지방상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023년 말 기준 행정구역별로 161개의 지방상수도사업자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수자원 환경이나 급수인구 등이 달라 수도서비스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도표] 수도의 구분



[도표] 일반수도의 건설·운영 및 관리주체

구 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수도건설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2 이상)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시·군)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	K-water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시·군)	지방자치단체 마을별 시설관리위원회
사업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3. K-water 지방상수도 수탁사업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른 사업자는 직접 지역주민에게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K-water가 지방상수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야 한다. K-water는 2000년대 초 정읍시와 논산시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3개의 지방상수도(천안공업용수 포함)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급수서비스 인구는 260만명(천안공업용수 미포함)이다.

[도표] 지방상수도 수탁사업 현황

* 출처 : 환경부 (2023년 상수도통계) / 천안공업 제외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2017
지자체 (22개소)	논산	정읍, 예천, 사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거제, 단양, 나주, 양주	함평, 파주, 광주	통영, 고성 (경남)	진도, 완도, 장흥	봉화	청송
급수인구 (260만명)	10	27	21	14	64	92	17	11	2	2

이러한 지방상수도 수탁사업을 통하여 급수인구 수와 고객만족도, 유수율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도표] 위·수탁 협약 효과

급수인구			고객만족도			유수율		
수탁 前	수탁 後	차 이	수탁 前	수탁 後	차 이	수탁 前	수탁 後	차 이
176만명	260만명	84만명	66.29점	84.16점	17.87점	60.1%	85.3%	25.2%p

14.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 현대화사업 개요

현대화사업(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분	(1단계)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단계)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업 대상	125개 지자체, 171개 사업 * 상수관망 124개, 정수장 47개	161개 지자체, 224개 사업 * 상수관망 194개, 정수장 30개
사업 기간	'17년 ~ '24년 * 단위 사업기간 : 3 ~ 5년	'24년 ~ '37년 * 단위 사업기간 : 5 ~ 6년
총 사업비	5.03조원	6.95조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 동안 관망정비공사,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대상 급수구역의 유수율 85% 이상 달성하고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경과년수가 20년 이상(기계식 여과는 10년 이상) 이면서 정수처리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정수장 부분·전면개량 공사, 정수장 재건설 공사, 정수장 통합건설 공사 등이 해당되며 사업기간 동안 시설개량 준공을 목표로 한다.

구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선정 대상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	경과년수 20년 이상(기계식 여과는 10년 이상) 이면서 정수처리 기능이 저하된 시설
사업 지원 범위	- 시·군내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 * 관망정비 공사·누수탐사 및 정비 - 시·군내 전체 급수구역 *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 정수장 부분·전면개량 공사 - 정수장 재건설 공사 - 정수장 통합건설 공사 (공사별 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포함)

2.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현대화사업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수행주체이며 K-water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등에 따라 위·수탁을 통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년 선도사업 21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49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K-water는 102개 사업을 수행 중이다.

[도표] '현대화사업 년도별 수탁 현황 (2025년 기준)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2024	2025
합 계	102	9	11	33	25	3	2	14	5
관 망	97	8	10	31	25	2	2	14	5
		황성, 부여, 서천, 태안, 장수, 신안, 의성, 함양	영동, 옥천, 홍성, 예산, 진안, 고창, 강진, 영광, 남해	가평, 인제, 양양, 과산, 완주, 순창, 고성, 청송, 군위, 거창, 함안, 속초, 보령, 군산, 거제, 해남, 김천, 김해, 양양, 영주, 영동, 양구, 삼척, 원주, 동해	칠곡, 영양, 양양, 고성, 밀양, 청양, 당진, 보령, 서산, 천안, 공주, 증평, 무안, 증평, 익산, 김제, 전주, 김해, 여주, 제주, 동두천, 정읍, 고령	삼척, 부여	청송, 제주	보성, 봉화, 고령, 함천, 남해, 남원, 제주, 홍성, 제영, 포항, 의령, 제천, 양구, 경주	제주(4), 영광
정수장	5	1	1	2	-	1	-	-	-
		단양	고성	봉화, 충주	-	동두천	-	-	-